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9. 11.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3년 9월 3일

나. 발 의 자 : 윤동규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 2013년 9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3년 9월 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윤동규 의원)

가. 제안이유

-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우와 지원 외에 영등포구에서 예우와 지원 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
- 2) 대상자의 적용범위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
- 3)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신청에 관하여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및 그 유족과 가족에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 외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이용 및 사용료 감면, 명절시 위문 등 지원사업과 공적 소개 등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의사상자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사상자의 수는 1970년부터 약 20년간은 총 39명이었으나 1990년 이후 물놀이 사고 구조행위 등의 증가로 2013년 6월 기준 67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등록인원은 2012년 기준 124명으로 조사되었고, 우리구는 현재 3세대 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는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보상금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2011년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위로금과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본 제정안이 점점 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동을 높이 기리고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우리 구에서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 등을 예우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향후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0
----------	-----

발의연월일 : 2013년 8월 일

발의자 : 윤동규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외에 영등포구에서 의사상자 등에게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높이 기리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 3조, 안 제4조)

다.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신청에 관하여 명시함.

(안 제5조, 안 제6조)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다. 합 의 : 사회복지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합의

라. 입법예고(2013. 8. 22 ~ 8. 27)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영등포구에서 추가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2. 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에서 법 제3조에 따른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명절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2. 구가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른 감사장 등 수여
2. 구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 소개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사상자 등의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